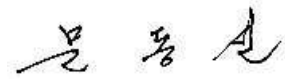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0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안이유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성보호 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에 일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21조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

## 3. 참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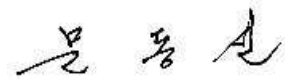
-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입법 예고기간 : 2012. 8. 1 ~ 8. 21(20일간)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특별휴가) ①·② (생략)</p> <p>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④·⑤·⑥·⑦ (생략)</p>	<p>제21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② ----- -----</p> <p>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④·⑤·⑥·⑦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1호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육시설 종사자는”을 “어린이집 직원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를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린이집의 원장

제5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5호 중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제6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린이집의 설치)”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야간보육(24시간제)시설”을 “시간연장(24시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2항의 “시설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을 “기관기준”으로 “종사인원”을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물”을 “건물 및 기타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시설”을 “건물”로 “증설”을 “추가”로 “시설”은을 “해당부지 또는 건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을 “해당부지 또는 건물”로 한다.

제18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종사자)”를“(보육교직원)”으로 하고,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고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는 시설장”을 “보육교직원은 원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장의 번호를 제4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1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로 하며, 제3호 “인건비”를 “급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6호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장의 번호를 제5장으로 한다.

제7장의 번호를 제6장으로 한다.

제25조 제목“(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을“(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으로 하고,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 20일간



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④, ⑤ (생략)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방과 후 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어린이집  
-----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 8 조 ( 기 능 )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어린이집  
-----

**연행**

**개정안**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5. ----- 어린이집의 ----- 원장  
-----  
--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  
국·공립어린이집-----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제12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①국·공립어린이집  
-----  
-----  
-----  
-----.



연 행	개 정 안
<p><b>제16조(수탁자의 의무)</b>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u>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u>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u>국·공립보육시설</u>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모든 <u>시설물</u>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가 새로운 <u>시설</u>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u>시설</u>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p> <p>④, ⑤ (생략)</p> <p><b>제17조(위탁의 취소)</b> ① (생략)</p> <p>1. (생략)</p> <p>2. 수탁자가 공익상 <u>보육시설</u>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b>제16조(수탁자의 의무)</b> ①</p> <p>----- -----<u>기관 기준</u>-----<u>보육교직원</u> -----.</p> <p>②-----<u>국·공립어린이집</u> ----- -----<u>건물</u>-----<u>및</u>-----<u>기타재산</u> -----.</p> <p>③-----<u>건물</u>-----<u>추가</u> ----- -----<u>해당부지</u>-----<u>또는</u>-----<u>건물</u> ----- -----.</p> <p>④, ⑤ (현행과 같음)</p> <p><b>제17조(위탁의 취소)</b>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u>어린이집</u> -----</p>

연 행	개 정 안
<p>3.~5. (생 략)</p> <p>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 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p> <p><b>제18조(손해배상)</b>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b>제19조(종사자)</b> ① <u>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u>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u>종사자</u>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p> <p>② 위탁운영 <u>보육시설의 시설장</u>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u>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u>는 <u>시설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u> <u>군산시에 보고</u>하여야 한다.</p>	<p>3.~5.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부지 또는</u> <u>건</u>-----<u>물</u> -----.</p> <p><b>제18조(손해배상)</b> ----- <u>어 린 이 집</u> ----- -----.</p> <p><b>제19조(보육교직원)</b> ① <u>어린이집-원장</u> ----- -----<u>보육교직원</u>은 -----.</p> <p>② -----<u>어린이집의 원장</u> -----<u>보육</u> <u>교 직 원 은</u> - - <u>원 장</u> ----- -----.</p>
연 행	개 정 안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장 비용

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 2. (생략)
-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4.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 5.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 6. 보육시설(정부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냉난방비

제20조(지도·감독) ① -----어린이집  
-----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비용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 어린이집  
-----  
-----.

-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 2. (현행과 같음)
- 3. 시간연장 보육교사 급여
- 4. ----- 어린이집  
-----
- 5. 어린이집-----
- 6. ----- 어린이집  
-----

연 행 개 정 안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 어린이집  
-----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보육 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5. (생략)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3. (생략)

**제6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 계획 수립·시행

**제7장** 보칙

**제25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항 일련번호 삭제)** - - - 어 린 이 집

1.~5.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 - - 어 린 이 집

1.~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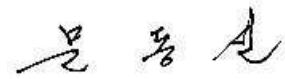
**제5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 계획 수립·시행

**제6장** 보칙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어린이집 보 육 교 직 원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2호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경우
- 2.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1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범원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 2. 세부기준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제5조 관련)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 출 기 한	년 월 일 까지				

군 산 시 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1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군산시 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제5조 관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제6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업소명 (시설명)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개인통지용)

계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조제한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현/동)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년 월 일까 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일부 인		년 월 일	
군산시청			

과태료 납부서  
(은행보관용)

계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조제한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현/동)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영수증필통지서  
(시통보용)

계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조제한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현/동)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군산시청 귀하			

영 수 증  
(개인보관용)

계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조제한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현/동)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6조 관련)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	--

위반사항	
------	--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	--	--------	--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제6조 관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번호		당초고지일자		
취소(변경) 내 역	당초고지금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 유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7조 관련)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됩니다.
-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9조 관련)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와 같은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의료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 : 군산시장
-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3조)
  - 과태료 부과대상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조)
- 처분의 사전통지 등(안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조)
-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안 제7조)
- 강제징수(안 제8조)
-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관리(안 제9조)
- 과태료의 귀속(안 제10조)
  - 과태료는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 나. 제정 조례안

다. 입법예고[2012. 6. 15 ~ 7. 6(22일)] 결과 : 의견 접수사항 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3호

###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 조례의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를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li> <li>○ 상수원보호구역</li> <li>○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 2,000미터 이내</li> <li>- 소·닭·젓소·오라개 : 500미터 이내</li> <li>- 양·사슴 : 300미터 이내</li> <li>- 말 : 200미터 이내</li> </ul> </li> </ul>

#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악취 및 해충피해 등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제한지역 변경 - (안“제3조 별표1“)

◇ 돼지·닭·개 500미터 이내

⇒ 돼지 2,000미터 이내, 닭·개 500미터 이내.

◇ 오리·양·사슴 300미터 이내

⇒ 오리 500미터 이내, 양·사슴 300미터 이내.

◇ 소·젓소·말 200미터 이내

⇒ 소·젓소 500미터 이내, 말 200미터 이내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정비

##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관련없음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2. 6. 16. ~ 7. 5.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의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단속 및 처분) ① <u>군산시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1】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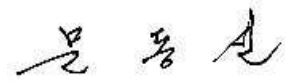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li> <li>○ 상수원보호구역</li> <li>○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닭·개 : 500미터 이내</li> <li>- 오라·양사슴 : 300미터 이내</li> <li>- 소·젓소·말 : 200미터 이내</li> </ul> </li> </ul>

개 정 안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li> <li>○ 상수원보호구역</li> <li>○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 2,000미터 이내</li> <li>- 소·닭·젓소·오라·개 : 500미터 이내</li> <li>- 양·사슴 : 300미터 이내</li> <li>- 말 : 200미터 이내</li> </ul> </li> </ul>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4호

###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장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 받아 운행하는 노선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 (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제3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관리 계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1. 제안이유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 조례 제정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정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호 사업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자동차의 고급화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 낡은 차량의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 【안 제4조】

-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중 버스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함.

### 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안 제5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실시

-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 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금액으로 산정함.

#### 라. 재정 지원 결정 【안 제8조】

-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함
  - 시의원,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공인회계사,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9조)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회 심의사항
  - 재정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 누설금지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하도록 함.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교통 관리계장으로 함
- 출석위원에게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함

#### 사.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아. 재정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시 홈페이지 공개사항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

#### 타.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안 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포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제3조 (보조금 지원)

#### 나. 기 타

- 입법예고 : '12. 6. 15 ~ '12. 7. 5 (21일간) / 의견 접수사항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5호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전부개정조례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 3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후생복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

6.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7.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 제2장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

제3조(운영시설) ①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헬스장
2. 후생복지시설 : 홀/휴게실, 다목적 강의실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화장실, 매표실, 창고, 주차장, 본부석, 락카룸 등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①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③운동경기나 또는 그 외에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때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 · 개인연습 ·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민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센터시설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자

6. 수영객이 유아동반 입장시 익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센터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고지 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 영 장 : 06:00~20:00 (평 일)

06: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2. 게이트볼장 : 09:00~18:00

3.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 06:00~22:00

4. 헬 스 장 : 06:00~19:00 (평 일)

06:00~17: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제11조(이용료) ①체육센터시설의 이용료는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로 한다.

②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체육센터의 이용 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이용자가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수영장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4.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 감면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2. 불우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 경로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군경행사
3.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는 해당 기본료의 50%
4. 장애인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시 50%감면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이용료 감면절차) 체육센터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제12조 해당 각 호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체육센터 이용 5일전에 이용권 또는 회원권의 환불을 신청하여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 반환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5.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구입한자가 이용일 2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6. 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5조(휴관) ①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2.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②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권) 수영장 및 헬스장의 1월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징수) 이용자가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설의 위탁·임대관리) ①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단,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 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타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때
4. 기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이 조례를 위반할 때

제22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4조(손해배상) ①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시설운영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부가세별도)	비 고
1회 입장	성 인	2,000	<u>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u>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경노	1,000	
회 원	성 인	40,000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경노	20,000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 1인포함)에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이상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이내로 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전용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 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축 구 장	체 육 경 기	30,000	20,000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체 육 이 외	100,000	60,000	
테 니 스 장 (1면당)	체 육 경 기	12,000	8,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 육 이 외	14,000	10,000	
족 구 장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6,000	4,000	2시간 기준
게이트볼장	무	료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등록 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주간사용자가 야간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시에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어린이 이용료는 기본료의 70% 징수함

[별표3] 테니스장 이용료

구 분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테니스장 (1면당)	2시간당	<u>1,600원</u>	

-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이하로 하며 토요일,공휴일 및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 할수 있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별표4]

##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종 별	기 준	금 액
전기조명 이용료	1일1회	(전기기본이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전 기	1시간	관허요금
락카룸 이용료	1회	관허요금

【별지1】

이 용 권

<p>NO. 년 월 일</p> <p>1일(1회) 입장권</p> <p><b>일반성인</b></p> <p><b>2,200원</b></p> <p>-1회 입장 2시간이내- 군산국민체육센터</p> <p>년 월 일 영수증 00000 2,200원</p> <p>한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 군산국민체육센터</p> <p>사업자 NO 401-83-03692</p>	<p>NO. 년 월 일</p> <p>1일(1회) 입장권</p> <p><b>어린이경로</b></p> <p><b>1,100원</b></p> <p>-1회 입장 2시간이내- 군산국민체육센터</p> <p>년 월 일 영수증 00000 1,100원</p> <p>한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 군산국민체육센터</p> <p>사업자 NO 401-83-03692</p>	<p>NO. 년 월 일</p> <p>1일(1회) 입장권</p> <p><b>청소년군경일반</b></p> <p><b>1,650원</b></p> <p>-1회 입장 2시간이내- 군산국민체육센터</p> <p>년 월 일 영수증 00000 1,650원</p> <p>한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 군산국민체육센터</p> <p>사업자 NO 401-83-03692</p>	<p>NO. 년 월 일</p> <p>1일(1회) 입장권</p> <p><b>장애어린이경로</b></p> <p><b>550원</b></p> <p>-1회 입장 2시간이내- 군산국민체육센터</p> <p>년 월 일 영수증 00000 550원</p> <p>한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 군산국민체육센터</p> <p>사업자 NO 401-83-03692</p>
--	---	---	---

※ 일반성인, 어린이,경로, 청소년,군경, 장애어린이,경로

**【별지2】**

회원권 (앞면)

**회 원 권**

NO :

프 로 그 램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기 간 :

군 산 시 장

회원권 (뒷면)

**회 원 준 수 사 항**

1. 구입하신 회원권은 조례 제14조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의한다.
2. 본 회원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회원은 체육센터의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함
4. 입장시 회원권을 열쇠 보관함에 보관 후  
퇴장시 열쇠반납 후 회원권 인수

【별지3】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경 기 장		
이 용 목 적		
이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단	일 반	원
체	군경·학생	원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전 화 :

군산시장 귀하

【별지4】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이용허가서

1. 신청인주소 :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화 : )

2. 이용허가

시설명	목적	이용기간	이용시간	비고

3. 이용료

구분	금액 (기본액)	산출기초	비고
이용료			

4. 조건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인 )

【별지5】

이 용 료 납 부 고 지 서

영 수 증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 부 서

계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경상적 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금 <input type="text"/> (₩ ) ----- 단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금 고 납부자 성명 귀하		

계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input type="text"/> (₩ ) ----- 단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금 고 군 산 시 징 수 관 귀하		
납 부 자		
적 요		

계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input type="text"/> (₩ ) ----- 단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금 고 군 산 시 징 수 관 귀하		
납 부 자		
적 요		

계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input type="text"/> (₩ ) ----- 단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금 고 군 산 시 징 수 관 귀하		
납 부 자		
적 요		

【별지6】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 :  
     전 화 :
- 2.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
- 3. 이 용 목 적 :
- 4. 이 용 기 간 :
- 5. 감 면 의 종 류 : 면제, 감액
- 6. 감 면 의 사 유 :

위와 같이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7】

### 회 원 대 장

입력시간 : 년 월 일

코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접수일자	만료일자	회원구분	요금	회원권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제안이유

국민체육센터에 정식인정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경기장 등이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이용료**와 **운동장 조명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수영장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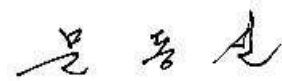
- 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이용료 신설
- 나. 부대시설 이용료 신설 (전기 및 수도 이용료)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 (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다. 입법예고 : 2012. 7. 16. ~ 2012. 8. 6. (21일간)
- 라. 기타사항 : 타 시 조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교표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0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46호

###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매년 7월 5일”을 “7월중”으로 한다

제2호 중 “매년 11월 25일”을 “11월중”으로 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u>            1. 제1차 정례회는 <u>매년 7월 5일에</u>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u>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u>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u>매년 11월 25일에</u> 집회한다.</p>	<p><u>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u>            1. ----- <u>매년 7월중에</u>            -----            -----            -----            2. ----- <u>매년 11월중에</u>            -----.</p>
<p><u>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  <u>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p>	<p><u>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  <u>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p>

#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4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정례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간 1차 정례회 회기중에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실시 시기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순기능을 수행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 제3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중에 집회한다”로 변경
- 나. 안 제3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에 집회한다”로 변경
- 다. 안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내용을 제4조 제2항에 삽입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 하도록 변경
- 라.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4조
- 나.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다.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조례

## 군산시 공고 제2012-1892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지역내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코자 함.

####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함(안 제1조)
-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 미교부 조건(안 제3조)**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9명 이내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5조)**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450-6107, 팩스 450-427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 (전화 450-6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군산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과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1894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을 투자액 뿐만아니라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2. 주요내용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고용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의2)
  - ▶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산업입지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
- 창업 및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 기존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 10억원 초과금액의 투자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투자보조금 지급시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규정신설(안 제19조의4)
  - ▶ 투자비용뿐만아니라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시 조례 개정(안 제19조의5)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 기업활동 지원범위 등 규정신설(안 제19조의6)
  - ▶ 4대 전략 26개 실천과제 추진 근거 마련
- 보조금 지급시 투자이행 계획 담보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5조4항)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184,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전화 450-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촉진함”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 부담금”을 “따라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사무소가 있는곳”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함은”을 “함은 공장착공 신고일 이전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상시고용인원”을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관광사업인 경우”를 “관광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유치에 대한”을 “유치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갖추어 이를”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4.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6. “신·증설기업 지원” 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기업에 대”를 “투자기업 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기업에 대”를 “투자기업을 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를 “외국인투자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를 “따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교육훈련에 한”을 “교육훈련에 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업에 대한”을 “기업을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시고용인원”을 “항상 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3퍼센트 범위안”을 각각 “3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상시고용인원”을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상시고용”을 “항상 고용”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상시고용하기 위해”를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중전의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단서 중 “상시고용”을 “평상시 고용”으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원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2. 우수기업 발굴 등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5.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
6.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6장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사업 추진 <2002.10.31 본장신설>”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투자실행에 대”를 “투자실행을 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소한”을 “축소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년 이내”를 “7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10년 이내”를 “7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제19조의4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p>	<p><u>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p> <p>제2조(정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해당</u> ----- ----- ----- 따라 ----- ----- -----</p>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 (생략)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생략)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 12. (생략)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4. (생략)

-----  
-----.

가.-----  
-- 따라 부담금 -----  
-----  
-----

나. (현행과 같음)

7. -----  
-----  
----- 따른 -----.

8. -----  
----- 주  
사무소가 있는곳-----  
-----.

9. (현행과 같음)

10. -----  
-----  
----- 따른 -----  
-----.

11. · 12. (현행과 같음)

13. ----- 함은 공장  
착공 신고일 이전부터 -----  
-----  
-----.

14. (현행과 같음)

15. “대규모투자기업” 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6. · 17. (생략)

18. “이전 건당”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 을 말한다.

19.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0. · 2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5. -----  
-----  
----- 평상시 고용인원-----  
----- 관광사업은 -----  
-----.

16. · 17. (현행과 같음)

18. -----  
-----  
유치를 위하여 -----  
-----.

19. -----  
-----  
-----  
----- 갖추어 -----  
-----.

20. · 21. (현행과 같음)

22.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 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4. “신설” 이라 함은 건축물

<신 설>

<신 설>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④ (생 략)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6. “신·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의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② (생략)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  
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  
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  
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  
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2. (생략)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  
입금 등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2. ----- 투자기업 위-----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의 -----  
-----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따라 -----  
-----

-----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  
-----  
-----

--.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 따라 -----  
-----  
-----  
-----  
-----  
-----

②-----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그밖의 -----  
-----

제8조(기금의 용도) -----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  
용한다.

- 1. (생 략)
-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 3. (생 략)
-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  
산) ①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  
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  
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  
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  
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 2. ----- 투자기업을 위-----  
-----
- 3. (현행과 같음)
- 4. 그밖의 -----  
-----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  
-----.

제11조(지방세 감면) -----  
----- 외국인투자에게-----  
-----  
-----  
-----.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  
례) ----- 따라 -  
-----  
-----  
-----  
-----

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  
-----.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  
-----  
-----.

④-----  
-----  
----- 외국인투자기업에 -----  
-----  
-----.

⑤----- 따라 -----  
-----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 따라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 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②----- 따라 -----  
-----  
----- 항상 -----  
-----  
-----  
-----  
-----  
-----  
-----.

③----- 따라 고용보  
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 -----  
-----  
-----.

제14조의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 범  
위-----  
-- 따라 -----  
-----.

②----- 따라 -----  
-----  
-----  
-----

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

----- 범위-----  
-----  
-----  
-----  
-----.

③----- 따라 -----  
-----  
----- 교육훈련  
에 한정-----.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  
-----  
-----  
----- 범위-----  
-----  
-----.

② ----- 따라 -----  
-----  
-----  
-----  
----- . -----  
- 기업을 위하여 -----  
-----  
-----.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

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

-----.

1. (현행과 같음)

2. -----  
----- 따라  
-----  
-----

3.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

③-----  
-----  
-----  
-----  
-----  
----- 상응 -----  
-----

-----.  
④-----  
----- 해당 -----  
-----  
-----

⑤-----  
----- 해당 -----

인투자기업이 입주 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  
-----  
-----.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  
----- 항상 고용인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3퍼센트 범위-----  
-----  
----- 3퍼센트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  
 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  
 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  
 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  
 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  
 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  
 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  
 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  
 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  
 ----- 각 호-----  
 -----  
평상시 고용인원 -----  
 ----- 각 호-----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고용보조금) -----  
 -----  
 -----  
 -----  
 ----- 항상 고  
용-----  
 -----  
 -----  
 -----.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  
 -----  
 -----  
 -----  
 -----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  
 -----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  
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  
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  
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  
 ----- . ----- 평상시 고  
용 -----  
 -----  
 -----  
 ----- .

제19조의3(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원이상  
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  
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  
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  
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  
 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

<신 설>

2, 제19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 2. 우수기업 발굴 등
-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25조(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

<삭 제>

① 시장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한 자동차부품 집적단지 제공
-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의 생산 협력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 증대
- 3. 국내외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제26조(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삭 제>

투자통상전문가, 공무원 등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7조(사업단의 임기) ① 민간인

<삭 제>

신분으로서 채용된 사업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사업단원이 부여된 임무에 불성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과기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단의 지휘체계) 사업단은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운영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소속하에 두되 사업단의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예산지출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9조(재원조달)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삭 제>

- 1. 산업자원부 출연금
- 2. 도비 출연금
- 3. 시비 출연금
- 4. 기타 민간 출연금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공무원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

<삭 제>

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성과급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  
-----  
-----  
-----  
-----  
-----.

제33조(성과급 지원) ①-----  
-----  
-----  
-----  
-----  
-----  
-----  
범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 따라 -----  
-----  
-----  
-----  
-----  
-----  
-----.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 축소하였  
을 --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  
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  
----- 2년이내-----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  
----- 7년이내-----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  
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9. -----  
7년이내-----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  
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따라  
-----  
-----  
-----.

## 군산시 공고 제2012-1895호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2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내 사업장 ⇒ 관내 사업장으로 제한(안제4조)

나. 예비세대 10퍼센트 확보 ⇒ 3퍼센트 확보로 조정 (안제4조의2)

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별표)

- 미혼여성 1인당 15,000원 ⇒ 15,750원으로 인상
- 예외입주자 1호당 45,000원 ⇒ 47,250원으로 인상

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월 임대사용료

- 임대사용료 1호당 23,000원 ⇒ 24,150원으로 인상(별표)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313,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취업노사계 (전화 450-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의 “군산시 및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내 사업장”을 “군산시 관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의2(예비세대확보)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구 분	예외입주자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45,000원	1인당 : 15,00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23,000원	호당 23,000원



구 분	예외입주자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47,250원	1인당 : 15,75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24,150원	호당 24,150원



군산시 공고 제2012-1896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투자액 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및 구매실적(시내업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 주요내용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고용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규칙 개정  
(안 제9조의3)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 투자비용뿐만아니라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3조)
  - ▶ 업종전환신청,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 및 투자보조금 환수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184,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전화 450-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다른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첨단업종이라함은 “별표1”을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함은 통계법에 의해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조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2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

를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 완료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를 “2.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 례 제35조 제4 항)	
---	--

구비서류란의 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제10조의3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0조의3 관련)

## □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보조금 산정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2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50}{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 2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30}{100}$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구매계수})\} - 2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20}{100}$

## □ 조례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보조금 산정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50}{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30}{100}$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구매계수})\} \times \text{지원비율}(5\%)] \times \frac{20}{100}$

## □ 조례 제19조의2 보조금 산정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times \text{지원비율}(2\%)\} \times \frac{50}{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times \text{지원비율}(2\%)] \times \frac{30}{100}$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구매계수})\} \times \text{지원비율}(2\%)] \times \frac{20}{100}$

## □ 조례 제19조의3 보조금 산정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1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3\%)] \times \frac{50}{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 1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3\%)] \times \frac{30}{100}$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구매계수})\} - 10\text{억원(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3\%)] \times \frac{20}{100}$

$$\text{※ 투자고용계수} = \frac{\text{종업원수(명)}}{\text{투자액(억원)}} \quad \text{※ 구매계수} = \frac{\text{구매실적(억원)}}{\text{투자액(억원)}}$$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구매실적 : 물품, 용역, 공사비 등 투자금액 중 시내업체 이용실적(단, 부자매입비 제외)







<신 설>

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2의 보조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  
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  
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2-1897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가. 기존에 차등을 두었던 합창단원 정년조향을 불평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가능한 연령을 만 55세로 상향조정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예술단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실기평정과 관련된 위촉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예술단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

### 2. 주요내용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가. 시립합창단의 정년 만 50세, 시립교향악단의 정년 만 57세로 규정한 조향을 합창단의 경우 위촉가능한 연령을 만 55세, 교향악단의

경우 만 57세까지로 변경(안 제5조의 2)

나. 단원의 위촉해제조항 중 실기평정결과에 의한 위촉해제는 2회 연속경고를 받은 자로 기준 명시(안 제6조 제5호)

###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가.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미만) 단원에 대해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촉할 수 있다'를 '1회시 경고처리 및 2호봉 감봉, 2회 연속경고시 위촉해제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조 제2항)

## 3. 의견제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8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450-6125, 팩스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계(450-61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5조 중 “추천에 의하여”를 “추천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단원의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5세(사무직은 만 57세)까지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한 경우(평균 90점 이상)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6조제3호중 “요양을 요하는 자”를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6조제4호중 “기타의”는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5호중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는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2회 연속경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중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은 “단원의 복무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는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선된”은 “보궐선거된”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실비보상액”은 “실제비용 보상액”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는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7호 중 “기타”는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u>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u>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u>추천에 의하여</u>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u>추천에 따라</u>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의2(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u>탁월(평균 90점 이상)</u>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의2(단원의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5세(사무직은 만 57세)까지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u>탁월한 경우(평균 90점 이상)</u>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u>요양을 요하는 자</u></p> <p>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u>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u></p> <p>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u>저하된 자</u></p>	<p>제6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u>요양이 필요한 자</u></p> <p>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u>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u></p> <p>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u>저하되어 2회 연속경고를 받은 자</u></p>
<p>제7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u></p>	<p>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u>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u></p>
<p>제9조(단원의 복무) ①(생략)</p> <p>②<u>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9조(단원의 복무) ①(현행과 같음)</p> <p>②<u>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 ②(생략)</p> <p>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 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합창단지회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회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p> <p>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보선된</u>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운영위원회)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 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합창단지회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회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p> <p>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보궐선거된</u>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p> <p>1 ~ 2 (생략)</p> <p>3. 단원의 <u>실비보상액</u> 결정</p> <p>4.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p>	<p>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단원의 <u>실제비용 보상액</u> 결정</p> <p>4. <u>그 밖의</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7. <u>기타</u>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p> <p>③징계위원회의 구성, <u>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의</u>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p> <p>③징계위원회의 구성, <u>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u>할 수 있다.</p> <p>②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초청출연자나 특별출연자에게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u>할 수 있다.</p>	<p>제16조(실제비용보상) ①단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u>보상할 수 있다.</p> <p>②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u>예산의 범위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초청출연자나 특별출연자에게는 <u>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u>보상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합격한 자에 한하여”를 “합격한 자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추천에 의하여”를 “추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익년도”를 “다음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실비보상”을 “실제비용 보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1회시 경고처리 및 2호봉 감봉, 2회 연속경고시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는 “그 밖의”로, “단원에 대하여는”은 “단원에게는”

으로 한다.

제8조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첨부하여야 한다”는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타”는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후”는 “앞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례”는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촉”은 “위촉해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간동안”은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촉”은 “위촉해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촉”은 “위촉해제”로 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시립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단원의 전형방법) 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u>합격한 자에 한하여</u> 실시한다. ②전형시기와 전형위원의 위촉은 <u>지휘자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u>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u>각호와</u> 같이 한다. 1 ~ 3 (생략)	제3조(단원의 전형방법) 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u>합격한 자에 한정하여</u> 실시한다. ②전형시기와 전형위원의 위촉은 <u>지휘자의 요청 및 추천에 따라</u>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u>각 호와</u> 같이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 1에 의거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u>익년도</u> 보수를 결정한다. ②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u>각호와</u> 같이 한다. 1. 상임단원의 봉급은 별표 1의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 1에 의거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u>다음해</u> 보수를 결정한다. ②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u>각 호 와</u> 같이 한다. 1. 상임단원의 봉급은 별표 1의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u>예산의 범위 에서</u> 매월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2 ~ 4 (생략)</p> <p>③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u>각호</u>와 같이 한다.</p> <p>1. 수당은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지급할 수 있다.</p> <p>2.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u>각 호</u>와 같이 한다.</p> <p>1. 수당은 <u>예산의 범위에서</u> 지급할 수 있다.</p> <p>2. (현행과 같음)</p>
<p><u>제5조(실비보상) 기타</u>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u>을 할 수 있다.</p>	<p><u>제5조(실제비용보상) 그 밖의</u>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는 <u>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u>을 할 수 있다.</p>
<p>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 (생략)</p> <p>②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미만) 단원은 <u>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제할 수 있다.</u></p> <p>③출산, 질병 등 <u>기타</u>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u>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u> 같음할 수 있다.</p>	<p>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u>1회시 경고처리 및 2호봉 감봉, 2회 연속경고시 위촉해제할 수 있다.</u></p> <p>③출산, 질병 등 <u>그 밖의</u>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u>단원에게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 평정으로</u> 같음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u>산입하지 아니한다</u>.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u>제외한다</u>.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u>첨부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u>붙여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및 <u>기타</u>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p> <p>2 ~ 5 (생략)</p>	<p>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및 <u>그 밖의</u>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p> <p>2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특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u>전후</u>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1조(특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u>앞뒤</u>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u>조례</u>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한다)</u>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u>해촉·출연정지·감봉</u>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p> <p>②(생략)</p> <p>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u>기간동안</u>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④(생략)</p> <p>⑤징계처분에 따라 <u>해촉</u>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p>	<p>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u>위촉해제·출연정지·감봉</u>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u>기간 동안</u>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징계처분에 따라 <u>위촉해제</u>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제14조(단원증) ① (생략) ②단원은 <u>해촉·퇴직시</u> 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단원증) ① (현행과 같음) ②단원은 <u>위촉해제·퇴직시</u> 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금)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u>예산의 범위에서</u>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고시 제2012-106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9월 일

###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유수지	저류시설	나운동 135-1 일원	-	1,832.0	1,832.0	금회	
신설	5	유수지	저류시설	나운동 316-25	-	1,187.0	1,187.0	금회	
신설	6	유수지	저류시설	중앙로1가 10-1 일원	-	760.3	760.3	금회	

###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110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26.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은파레지던스힐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케이동산업개발 / 대표 : 이성일
  -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경장동 500-3 광동빌딩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나운동 867-1번지
  - 나. 대지면적 : 1,752.8m<sup>2</sup>
  - 다. 건축면적 : 334.79m<sup>2</sup>
  - 라. 연 면 적 : 5,949.1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1동, 16층, 126세대
 


- 28.540형(전용면적 : 17.70m <sup>2</sup> )	12세대
- 28.370형(전용면적 : 17.36m <sup>2</sup> )	6세대
- 28.444형(전용면적 : 17.67m <sup>2</sup> )	24세대
- 28.290형(전용면적 : 17.36m <sup>2</sup> )	60세대
- 56.045형(전용면적 : 34.99m <sup>2</sup> )	24세대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10,600,266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11월 ~ 2014.02월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111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2. ~ 10. 16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9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6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19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814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9월 21일

-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9-5번지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사업
    - 2) 명 칭 :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및 석등 주변정비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면적/연장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주차장.도로	주차장	-	1,356m <sup>2</sup>	-	-	1,356	
	소로2-978	8	29m	8	29	597	
	계					1,953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문화체육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9. ~ 2013. 2. 28.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계	-	-	-	24,208	1,953	-	-	-	-	-	
1	개정·발산	42-4	도	1,113	133	-	군산시				
2	개정·발산	49-2	구	102	8	-	농수산부(국 )				
3	개정·발산	49-3	답	1,440	28	충남연기 조치원읍 gs자이123/1 503	권오선				
4	개정·발산	49-5	답	3,270	1587	-	군산시				
5	개정·발산	55-2	도	106	35	-	농수산부(국 )				
6	개정·발산	55-4	답	2,081	8	전주덕진 금암동 1583-22	채규안				
7	개정·발산	55-6	도	116	38	-	옥구군				
8	개정·발산	618-79	도	15,980	116	-	농수산부(국 )				

군산시 공고 제2012-1876호

##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군 산 시 장

### 1. 201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년 6월 1일
- 나. 개별 주택수 : 249호 (해망동 1004-90번지 외 248호)
- 다. 공시 안내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라. 열람 안내 : 시청 세무과(2층), 군산시홈페이지([www.gunsan.go.kr](http://www.gunsan.go.kr))

### 2.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 2012. 9. 28 - 10. 29
-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제출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2층)
-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 서식비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
-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0-429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12-1905호

###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 다 음 -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상 윤)

####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10월 9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
- 제출서류 : 교섭요구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요구사항

#### □ 유의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로 문의 (☎ 063-450-6514)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903호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 10. 2.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 휴업일 지정
  - 영업제한 시간 : 0시부터 ~ 0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두 번째 · 네 번째 일요일(매월 2일)

2.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47조(처분의 사전통지 ~ 준용)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0. 2 ~ 2012. 10. 22(20일간)

4. 대규모점포등 현황

구 분	계	이마트	롯데마트	GS수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비 고
대형마트	2	1	1			
기업형수퍼 (SSM)	2			1	1	

5. 의견제출 기간 : 2012. 10. 2 ~ 10. 22일까지(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 열람방법 : 군산시청([www.gunsan.go.kr](http://www.gunsan.go.kr))홈페이지, 시보
- 접수기관 : 군산시 지역경제과
- 제출기간 : '12. 10. 2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인터넷, 우편 등(우편은 10. 22일 도착분 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주 소 : (우 573-703) 전북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군산시청)
  - 전화/팩스 : 063) 450-4352 / 063) 450-6391